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 (안 제38조제1항)

-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출자자에게 지자체 지분증권 수의매각이 필요하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공유지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SPC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부지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

※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발표('23.7.12. 관계부처 합동)

- 2) 이에,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

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시행자(SPC)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 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 부여

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 (안 제27조제7항)

- 1) 시·도는 폐교를 회계간 재산이관의 방법으로 취득 활용하고자 하거나 현행 법령 상 회계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취득가격)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시·도로 이관하는데 소극적이고 민간에 매각을 선호하는 등 지자체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
- 2) 이에, 시·도와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 외에도 재산가격*, 감정평가액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다.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 교환 요건 완화 (안 제27조제3항)

- 1)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 시에는 상호 재산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호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만 필요하나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불형평 문제 발생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2)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이나 타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30.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를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를 “상호 협의하여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대상에 공동 출자한 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

는 경우

제91조의2제1항을 제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생략) ③ <u>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u> ④ ~ ⑥ (생략)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u> <u><단서 신설></u> ⑧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해당</u> ----- ----- <u>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u>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 -----

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33.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생략)

--.

1. ~ 33. (현행과 같음)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대상에 공동 출자한 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현행 제1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74